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35 발의연월일: 2021. 9. 29.

발 의 자:김승남·김경만·김수흥

김의겸 · 김정호 · 백혜련

서동용・양정숙・윤영찬

윤재갑 · 인재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게 하면서(법 제28조),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제30조).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 업종에 「수산업법」제8 조의 면허어업이 제외되어 있어 면허어업은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업자협약을 체결 후 승인(법 제30조)받고, 변경 및 폐지(법 제31조 및 제32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법 제33조)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 개선이 필 요함.

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하여 어업자협약 제도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을 "연안어업·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8조의 면허어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	
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u>연안어업·같은 조 제3</u>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항제1호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	법 제8조의 면허어업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	
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